

加速償却擁護論

盧炳卓

<目次>

I. 序言	1. 經營外的條件
II. 加速償却의 本質	1) 技術의 進步
1. 本質 I.	2) 貨幣價值의 變動
2. 本質 II.	3) 販賣競爭
3. 本質 III.	4) 人爲的 諸政策
III. 傳統的 減價償却理論의 批判	2. 經營內的要因
1. 定額法償却에 的 反對	1) 減價償却費의 壓力加重
2. 資本維持面에서 的 傷却目的觀의 變遷	2) 固定資產의 流動化
1) 靜態經濟量前提로하는 見解	3) 性能의 減少와 減價償却費의 負擔能
2) 動態經濟量重要視하는 見解	力問題
3) 諸見解의 批判과 加速償却論의 立場	4) 租稅負擔의 延遲效果
IV. 加速償却論의 主張論據	V. 結言

I. 序言

일찌기 古典派經濟學者들은 現實의 經濟가 完全雇傭狀態下에 있다고 假定하여 이론과 完全雇傭理論을 展開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J.M. Keynes에 의하면 現實의 經濟는 오히려 不完全雇傭狀態下에 有る이 正常의이며 이러한 不完全雇傭狀態를 前提로 한 새로운 理論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古典派理論은 그 前提가 틀렸으므로 理論自體도 잘못된 것이라 斷定하고 分析의 焦點을 不完全雇傭狀態下의 經濟現象에 集中시켰고 自己의 理論은 不完全雇傭狀態下에서 뿐만 아니라 完全雇傭狀態下에서 까지도 同時に 適用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一般理論」(The General Theory)이란 包括的인 名稱을 붙였던 것이다. 真實로 1930年代의 經濟의 現實은 一般理論(有效需要理論)과 같은 處方이 必要하였다. 그러나 經濟의 與件이 그 當時와는 완연히 變質된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한 一般理論도 점점褪色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적어도 社會現象을 研究對象으로하는 限 理論은 그時代 그社會의 現實

的與件과 遊離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現實을 直視하여 올바른 前提를 세우고 여기에 立脚한 理論이라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減價償却會計에 있어서도 非現實의 靜態經濟를 前提로하는 從來의 傳統的 減價償却理論을 批判하고 現實의 動態的 經濟與件을 前提로하는 新로운 減價償却理論, 즉 加速償却論(Theory of Accelerated Depreciation)이 要求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安定된 靜態經濟를 前提로하는 限 從來의 正統的 減價償却論이 内세우는 定額法 中心의 普通償却만으로도 投下資本의 完全回收라는 減價償却 本來의 目的是 充分히 達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實의 經濟는 技術의 進步, 貨幣價值의 變動, 販賣競爭의 激化등 動態的 要因이 不斷히 作用하고 있는 動態經濟라는데 問題가 있다. 이러한 動態經濟의 與件下에서는 固定資產, 특히 機械및 裝置의 物理的 耐用年數(physical service life)는 經濟的 耐用年數(economic service life)와 顯激한 差異가 있고 製品의 販賣에 의하여 固定資產에의 投下資本이 順調로이 回收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또 그것이 回收되었다하더라도 그것으로서 新舊資產의 對替를 保障할 수도 없는 것이다. 비록 期間損益計算의 正確性이란 한가지 目的이 達成된다해도 投下資本의 回收가 不可能하다면 減價償却의 目的是 充分히 達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後者の 目的이 보다 重要視된다는 것을 留意한다면 더욱더 그러한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經濟의 動態的 要因이 不斷히 作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減價償却會計도 단순한 投下資本의 回收(名目資本의 維持)라는 消極的 面에서가 아니라 企業으로 하여금 적어도 再生產能力만은 維持할 수 있도록 實質資本을 回收하여 恒久的으로 「實質資本의 完全한 保持」를 期한다는 積極的 面에서 그 참다운 目的을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같은 觀點에 서서 本 所論에서는 오늘날 크게 크로즈·업되고 있는 加速償却의 참다운 本質이 무엇이며 그것이 要請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를 從來의 減價償却理論을 批判하고 現實의 諸條件을 指摘함으로써 밝혀 보고자 한다.

II. 加速償却의 本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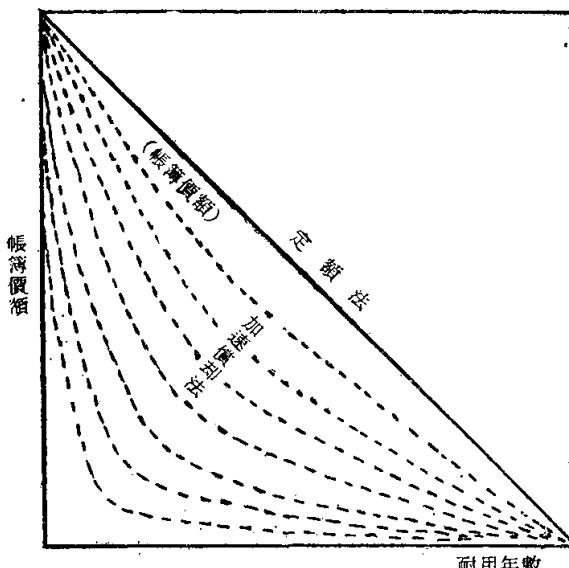
加速償却(Accelerated Depreciation 혹은 Depreciation Acceleration)의 本質을 正確히 理解하려면 특히 다음 세가지 점을 留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 (1) 定額法에 대한 相對的 概念이란 點
- (2) 取得原價에 基礎를 두고 있다는 點
- (3) 政策的 性格이 多分히 內包되어 있다는 點

1. 本質 I.

加速償却이 定額法(straight-line method)의 相對的 概念이란 것은 減價償却의 速度가 定額法에 의한 傷却速度보다 빠른 경우에는 如何한 方法이 使用되었던 간에 그것이 加速償却이라 通稱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加速償却의 類型은 無數히 많을 수 있다. (<第1圖> 참조) 말하자면 「加速的 減價償却이란 直線法에 比較하여 어떤 資產의 耐用年數의 初

第1圖 加速償却의 存在形態



期에 보다 많은 減價償却費를 認識하는 것을 말한다.」⁽¹⁾ 이하여 定額法에 의한 傷却을 普通償却(ordinary depreciation)이라 한다면 이것과 對立되는 것이 加速償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減價償却의 速度가 어느程度로 빨라야 加速償却이라 할 수 있다고 規定짓기는 困難하다. 그러므로 加速償却是 어디까지나 定額法에 의한 減價償却, 즉 普通償却에 대한 相對的 概念에 不過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定額法은 物理的 耐用年數(physical service life)를 그 計算基礎로 한 경우를 말한다.⁽²⁾ 通常의 物理的 耐用年數期間에 걸쳐 定額法에 의한 均分償却 以外의 初期多額償却 또는 早期償却의 結果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를 모

(1) L.E. Morrissey, "Contemporary Accounting Problems: text and case,". 1964, p. 249.

(2) 그런데 原則의 으로 定額法을 認定하고 있는 稅法下에서 耐用年數를 決定할 때 純粹한 物理的 耐用年數뿐만 아니라 經濟的 耐用年數도 고려하여 全般的으로 耐用年數가 약간 短縮되었을 경우는 이것을 基礎로 하여 定額法에 의한 減價償却을 하더라도 이것은 加速償却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단 機能的 減價를 重要視한 나머지 經濟的 耐用年數에 力點을 두어 耐用年數의相當한 短縮이 있었다면 定額法에 의한 普通償却도 實質적으로는 加速償却과 同一한 效果를 가져오는 것만은 事實이다. 따라서 그 限界를 分明히 하기가 困難한 경우도 많다.

두 加速償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加速償却이라 하면 會計學上에서 말하는一般的 意味의 加速償却是 勿論, 그 외에 稅法上 特定目的을 위하여 認定된 特別償却도 이를 包含하는 것으로 봄이 安當하다. 왜냐하면 定額法에 의하여 減價償却을 하는 때와 比較할 때 耐用年數의 初期에 있어서 多額償却 또는 早期償却의 結果를 가져온다는 점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원래는 60年의 耐用年數를 가진 어떤 固定資產을 稅法上 特定目的을 위하여 6年間에 定額法에 의하여 모두 傷却할 것이 規定된 경우에는 이것이 비록 定額法에 의한 傷却이라 하더라도 그보다는 早期償却의 効果를 가져오는 特別償却이라는 見地에서 加速償却의 範疇에 歸屬시켜야 할 것이다.

2. 本質Ⅱ.

加速償却是 取得原價(acquisition cost)를 그 計算基礎로 하여 아무리 加速的으로 減價償却을 實施한다 하더라도 傷却總額은 取得原價의 範圍를 超過할 수 없다. 「加速償却是 그 것이 如何한 形態로 行해지더라도 取得原價의 範圍를 逸脫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加速償却法은 取得原價主義에 立脚한 會計方式이다……이것이 加速償却法의 가장 基本의인 性格이다.」⁽³⁾ 이와 같이 볼때 加速償却이란 取得原價의 範圍內에서 耐用年數의 初期에 可能한限 多額의 早期償却을 하려는데 그 本質의 意義가 있는 것이다.

원래 減價償却의 計算要素 가운데 耐用年數와 殘存價額은 純全히 推定에 의하여 決定되므로 減價償却의 特質은 推定計算으로서 그 計算에 不確實性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基礎價額만은 取得原價를 使用하여 한편으로는 減價償却計算의 不確實性을 可能한限 排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耐用年數의 初期에 加速의인 早期償却의 効果를 얻으려는데 加速償却의 特質이 있다. 이와 같이 加速償却是 時價基準과는 無關한 것이다.

한편 傷却할 수 있는 總額은 「取得原價－殘存價額」으로 表示되므로 殘存價額을 零으로 하는 경우에 傷却總額은 最大로 되는데 이 때의 最大 傷却總額이란 바로 取得原價와 同等하므로 아무리 加速償却을 實施한다 하더라도 取得原價의 範圍를 超過할 수는 없다. 지금 인프레이션時期에 있어서 物價變動의 影響에 對備하여 加速償却을 實施하는 경우를 보자. 어떤 設備을 10年間에 100% 傷却하기로 하고 物價水準의 上昇에 따라 처음 2年間에 10%씩 追加하여 加速償却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처음 2年間의 每年 傷却額은 20% (원래 取得原價에 대한 10% 傷却 + 物價上昇에 의하여 附加된 10% 傷却)씩 傷却을 하게 된다. 따라서

(3) 高松和男, 『物價變動會計』, 1965, p. 153.

처음 2年間에 40%의 減價償却을 完了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60%를 殘餘年度에 每年 10%씩 正常償却을 하면 처음에 10年間에 걸쳐 償却기로 한 資產이 8年만에 償却을 完了하게 된다. 그렇다면 最後의 2年間은 償却費가 전혀 計上되지 않고 利益이 過大表示된다. 이缺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나머지 60%를 殘餘 8年間에 分割償却하기로 하면 每年 7.5%란 正常以下의 低率로 減價償却을 行하는 結果로 된다. 그러므로 償却總額은 取得原價의 範圍를 超過할 수는 없게 된다.⁽⁴⁾

3. 本質 Ⅲ.

일찌기 加速償却論이 主張되었던 動機를 보면 어디까지나 現實의 經濟的 與件의 變化에 符應하기 위한 政策的 見地에 立脚하고 있었던 것이다. 政策的 見地란 주로 租稅目的 또는 特定產業部門의 投資鼓勵目的을 위한 것임을 말한다. 各國에서 實際로 採用되어 온 여러가지 類型의 加速償却制度도 거의 모두가 그러한 政策的 見地에 立腳하고 있었던 것이다.⁽⁵⁾ 이때문에 加速償却의 類型은 政策的 目的에 따라 각각 다르고 그 目的을 규정한 稅法의 內容이 바뀜에 따라 不斷히 變轉하지 않을 수 없다. 혼히 加速償却을 「政策的 加速償却」이라 表現하는 所以도 바로 그러한 點에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加速償却論은 理論的 立場과 政策的 見地와의 交錯때문에 그 本質에 있어서 극히 複雜한 樣相을 內包하고 있다.⁽⁶⁾

III. 傳統的 減價償却理論의 批判

1. 定額法償却에의 反對

지금까지의 正統的 減價償却會計는 定額法 中心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定額法에 의한 減價償却是 現實的인 經濟與件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理論的으로도 여러가지 矛盾을 內包하고 있다.

前者의 說明은 後述하기로 하고⁽⁷⁾ 여기서는 우선 어떠한 理論的 矛盾이 內包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定額法의 理論的 矛盾으로서 다음 두가지를 指摘할 수 있다.⁽⁸⁾

(4) E.C. Brown, "Effects of Taxation on Depreciation Adjustments for Price Changes", 1952, p. 118.

(5) 本稿 "IV의 1의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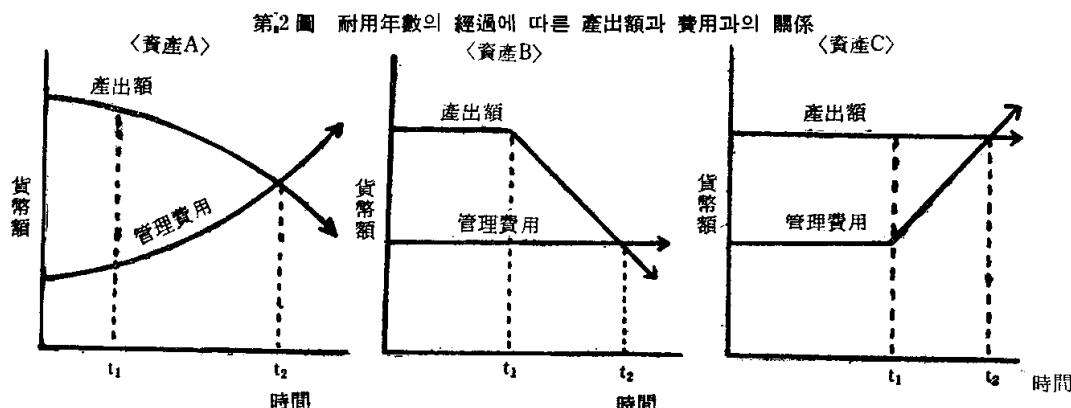
(6) 不破貞春, 「減價償却の目的, 效果」, 『企業會計』, Vol. 16, No. 6, p. 7.

(7) 本稿 "II의 2의 (1)" 참조.

(8) W.A. Paton & W.A. Paton, Jr., "Asset Accounting", 1964, pp. 270~1.

- ① 生產性의 遲減(declining productivity)을 考慮하지 않고 있다.
- ② 耐用年數의 經過에 의하여 殘存投資額(remaining investment)으로 부터 얻는 收益率(rate of returns)의 增加라는 矛盾된 結果를 가져온다.

定額法은 每期 同一額을 償却하므로 每期 固定資產의 性能, 即 生產性도 同一하여야만 合當한 方法이다. 그러나 모든 固定資產은 耐用年數가 經過함에 따라 原則的으로 그 性能이 低下하여 가며 따라서 그것을 使用함으로써 얻는 生產性도 遲減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耐用年數의 經過와 함께 當該 固定資產으로 부터 얻는 收益과 그에 대하여 支出되는 費用과의 對應(matching)에 의한 生產性의 變動은 다음과 같은 3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⁹⁾



위의 그림은 相異한 性質을 갖는 세개의 假設의 資產에 대한 產出額과 管理費가 時間의 經過에 따라 어떻게 變化하는가를 表示한 것이다. 資產 A는 t_1 時點 以後부터 性能이 遲減하는 반면에 管理費는 遲增하는 類型이고 資產 B는 t_1 時點 以後에도 管理費는 遲減하지 않고 不變이나 性能의 低下가 급격하여 產出額의 激減을 가져오는 類型이다. 그리고 資產 C는 修繕을 行함으로써 同一性能을 維持할 수 있는 類型이다. 이상 세가지 資產의 어느 것이나 收支面에서 보면 生產性이 低下되어 가고 있으며 마침내 t_2 時點 이후에는 損失이 생기게 된다. 以上과 같이 볼 때 特定資產으로 부터 얻는 收益力은 耐用年數의 初期에 높고 따라서 減價償却費의 負擔能力도 크므로 償却을 早速히 實施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加速償却을 하는 편이 安全한 方法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殘存投資額⁽¹⁰⁾으로 부터 얻는 收益率이 耐用年數의 末期에 가까워질 수록 遲增하는

(9) T.H. Hill & M.J. Gordon, "Accounting: a management approach", 1960, p. 197.
但 <資產 C>는 除外.

(10) 固定資產의 未償却殘額(unrecovered cost)을 말한다.

矛盾을 가져오는 경우를 보자. 지금 取得原價 2,000, 耐用年數 5年, 残存價額 400의 漁船을 定額法에 의하여 債却한다고 하자. 그리고 每年の 推定收益과 費用(減價債却費除外)가 각각 1,100과 700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表와 같은 結果를 얻게 된다.

<第Ⅱ-1表> 定額法債却에 의한 收益率의 變化

耐用數	帳簿價格 (A)	收 益	費			小計	純 收 益 (B)	純 收 益 率 ($\frac{B}{A}$)
			減價債却費	其他費用				
1	2,000	1,100	320	700		1,020	80	4.00%
2	1,680	1,100	320	700		1,020	80	4.76
3	1,360	1,100	320	700		1,020	80	5.88
4	1,040	1,100	320	700		1,020	80	7.69
5	720	1,100	320	700		1,020	80	11.11

耐用年數의 經過와 함께 固定資產의 生產性은 遞減하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定額法에 의하면 위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收益率이 第1年度의 4.00%에서 耐用年數가 끝나는 第5년의 11.11%까지 漸增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이 矛盾이라는 것이다.

2. 資本維持面에서 본 債却目的觀의 變遷

(1) 靜態經濟를 前提로 하는 見解

종래 減價債却의一般的인 目的은 正確한 期間損益計算과 投下資本의 回收라는 두가지 점으로 認識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에는 經濟의 動態的 要因이 強力히 作用함에 따라 減價債却의 目的도 資本의 回收 내지 資本維持와의 關係에 置重하여 把握할 必要가 있다. 이와 같이 減價債却의 目的觀을 資本維持와의 關係에서 물 때에는 그것이 立脚하고 있는前提에 따라 靜態經濟를 前提로한 見解와 動態經濟를 重要視하는 見解의 두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먼저 前者를 代表하는 것으로 名目資本維持說(maintenance theory of nominal capital) 내지 取得原價說(acquisition cost theory)를 보면 이것은 減價債却의 計算基礎를 取得原價에 두고 이 原價를 耐用年數의 期間에 걸쳐 計劃的且 規則的으로 配分함으로써 當該 固定資產에 대한 最初의 投下資本을 回收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取得原價를 一定期間마다 債却하여 그것이 完了되었을 때 投下資本의 回收가 實現되고 따라서 資本의 繼續的인維持가 可能하다는 것이다.

名目資本維持說은 從來의 傳統的 減價債却會計理論을 代表하는 見解로서 특히 減價債却

의 目的觀을 「耐用年數의 終了時點에 있어서 歷史的 原價로서의 減價償却性資產으로 부터 殘存價格見積額을 差引한것, 即 減價償却해야 할 資產額과 同額의 減價償却充當金이 計上되어 投下資本의 回收에 의한 資本의 完全保持가 達成된다⁽¹¹⁾고 보는데 特徵이 있다. 本說이 主張하는 바와 같은 取得原價 中心의 定額法의 減價償却方法은 租稅收入과 計算의 確實性이라는 見地에서 稅法에서도 原則적으로 이를 支持하고 있다.

(2) 動態經濟를 重要視하는 見解

現實經濟의 動態的 與件을 重要視하는 見解로서는 實物資本維持說(maintenance theory of material capital), 購買力資本(purchasing power or real capital)維持說, 그리고 收益力(earning power)維持說등을 들 수 있다.

첫째 實物資本維持說에 의하면 인프레이션時期에 있어서 貨幣價值의 低落이 현저한 때에는 減價償却의 目的을 單純한 名目資本의 維持에 둔다는 것은 無意味하며 償却完了와 함께 同一固定資產의 新舊對替가 可能하여 實物資本의 繼續的인 維持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貨幣價值의 變動이 심한 時期에 取得原價를 基礎로 하여 減價償却을 實施한다면 實物資本의 繼續的인 維持가 不可能하므로 時價(current prices)——對替原價(cost of replacement)——에 의한 償却이 더욱 合理的이라고 한다.⁽¹²⁾ 時價償却에 의하여 實物資本의 維持가 要求되는 理由는 다음 두가지 方向으로 檢討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前述한 바와 같이 同一資產의 新舊對替를 可能케 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를 檢討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架空利益의 發生與否를 檢討하는 것이다. 前者の 경우는 減價償却充當金으로 耐用年數가 終了한 때에 새로운 資產의 調達을 可能케함으로써 新舊資產의 對替를 통하여 企業資本의 實質的인 維持를 期하려는 것이다. 後자는 架空利益의 計上에 의한 資本의 潛蝕을 防止함으로써 企業資本의 充實을 期하자는 것이다. 인프레이션時期에는一般的으로 收益은 物價의 上昇을 反映하여 高水準으로 計上되는 傾向이 있는데 대하여 만약 여기에 對應할 費用으로서의 減價償却費는 이를 過去의 歷史的 原價에 立脚하여 算定하게 되면 費用을 過少計上한 結果로 되어 過去의 取得原價에 立脚하

(11) 増谷裕久, 『減價償却會計』, 昭和 40, p. 226.

(12) In particular, marked increase or decrease in the level of plant cost as reflected in new construction and purchases on the market raises a serious question as to the significance of depreciation charges computed without reference to current prices. The only figures which are truly important from the standpoint of operating management, it can be argued, are those based on cost of replacement, not recorded book cost. (W.A. Paton & W.A. Paton, Jr., "Asset Accounting", 1964, p. 266).

여 算定된 減價償却費와 現在 水準에서 收益에 對應되어야 할 減價償却費와의 差額만큼 架空利益(paper profit)이 發生한다. 이 部분이 課稅 또는 配當의 對象이 된다면 企業資本의 維持는 不可能하게 된다. 여기에 取得原價에 立脚한 減價償却에 對하여 物價水準의 變動을 反映한 時價償却(current prices depreciation) 또는 對替原價償却(replacement cost depreciation)이 主張되는 動機를 찾아 볼 수 있다.⁽¹³⁾

둘째 購買力資本維持說도 現實經濟의 動態性을 貨幣價值變動이라는 데서 求하면서 貨幣價值의 變動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對應하여 언제나 資本의 購買力を 같은 水準으로 維持할 수 있도록 하는 會計處理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減價償却의 目的도 單純한 名目資本이나 實物資本의 回收하기 보다는 投下資本과 回收資本이 갖는 同等한 購買力(purchasing power)의 維持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維持되어야 할 資本은 固定資產에 投下된 貨幣資本의 購買力이다. 이렇게 본다면 減價償却의 本質은 「現在 減價償却을 行하고 있는 減價償却性資產에 對한 取得時에 依어서의 貨幣價值와 同一한 購買力を 가진 資本을 準備하는 것」⁽¹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一般的으로 貨幣의 購買力은 物價指數에 의하여 表示되므로 物價指數를 減價償却費의 計算에 考慮하여야 한다. 즉 購買力의 變動을 反映하는 物價指數로 原價를 修正하여 이 「修正된 原價」(adjusted cost)를 減價償却費計算의 基礎價額으로 한다.⁽¹⁵⁾ 이때 物價指數에 의하여 修正하는 形式을 취한다하여 過去에 記錄된 固定資產의 取得原價를 전혀 放棄하려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取得原價를 基礎로 하되 物價指數의 援用에 의하여 修正을 加한다는 것 뿐이다.⁽¹⁶⁾

(13) 高松和男, 前掲書, 1965, pp. 149~150.

(14) N.A.A. Research Report No. 33, April 1958, p. 11.

(15) 高松和男, 前掲書, 1965, p. 57. 物價指數에 의하여 貨幣價值를 修正하여 會計處理하는 代表的인것으로서 安定價值會計(stabilized accounting)를 들수 있다.

(16) 다음 資料에 의하여 原價修正과 그에 의한 減價償却費를 計算해보자.

<資料>

- (1) 物價指數는 다음과 같았다.

① 営業開始한 때	150
② 第1年度末	175
③ 第2年度末	200

- (2) 固定資產의 取得은 다음과 같다.

① 営業開始한 때	₩ 300,000
② 第1年度末	₩ 100,000

- (3) 傷却率은 定額法에 의하여 年 10%로 한다.

<原價修正>

- (1) 営業開始한 때 取得한 固定資產

$$₩ 300,000 \times 200 / 150 = ₩ 400,000$$

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의 調査報告書에 의하면 美國에 있어서 著名한 會社 55個社 가운데서 約 3分의 1이 購買力維持說을 支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U.S. Steel 會社가 가장 積極的으로 支持하는 代表的 會社임이 밝혀졌다. 이들 會社에 있어서 購買力維持說에 立脚하여 實際로 實施하고 있는 減價償却方法으로는 加速償却이나 또는 弗貨價值의 換算에 의한 償却方式을 採用하고 있다.⁽¹⁷⁾

끝으로 本說은 資本維持라는 見地에서 租稅目的을 위한 減價償却을 積極的으로 反對하고 있다는 것이 注目된다. 歷史的 原價에 立脚하여 減價償却費를 測定하고 繼續的으로 投下資本의 回收를 行하는 경우에는 必然的으로 租稅에 의한 自己資本의 潛蝕을 招來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對替資本의 不足狀을 招來하게 되고 이때문에 그 不足資金部分을 다른 資金源泉에서 流用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投下資本의 完全한 保持가 不可能하다.

세째 收益力維持說의 主張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과 같은 動態的인 經濟條件下에서는 貨幣價值의 變動뿐만 아니라 技術의 急激한 進步와 激甚한 販賣競爭등 여러가지 動態의 인 要因이 不斷히 作用하고 있다. 이러한 事情下에서는 時價償却이라던지 同一資產의 新舊對替라던지 하여 實質資本을 維持하려는 것만으로는 無意味하다. 왜냐하면 同種 또는 異種의 보다 우수한 새로운 資產이 계속적으로 出現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貨幣價值의 變動以外에 急激한 技術的 進步와 販賣競爭의 激化등에 順應하기 위하여서는 減價償却의 目的도 方向을 달리하여 生產力의 確保와 收益力의 維持에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2) 第1年度末에 取得한 固定資產

$$₩ 100,000 \times 200/175 = ₩ 114,283$$

(3) 修正取得原價額 (第2年度 所有額)

$$₩ 400,000 + ₩ 114,283 = ₩ 514,286$$

<減價償却費計算>

(1) 第1年度末 ₩ 400,000 × 10% = ₩ 40,000

(2) 第2年度末 ₩ 514,286 × 10% = ₩ 51,429

- (17) 購買力維持說의 論據에 따른다면 가능한 한 加速償却을 實施하여 減價償却에 의하여 回收된 資本額이 最初의 投下資本額과 同一한 購買力を 갖도록 함이 要望된다. 그러나 實際의 稅法의 制約이 存在하므로 加速償却法의 濫用에는 限界가 있다. 또 加速償却에 의하여 充當金을 設定하는 경우 이부분에 대한 免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도 問題視된다.

지금 U.S. Steel 會社의 "Annual Report for 1952"에 나타난 報告內容을 보면 「1941年 부터 52年의 12年間에 있어서 201百萬弗의 加速償却計上額은 所得稅目的에서 控除되지 못하였다. 이 方法의 採用에 의하여 생길 이리한 非控除額에는 稅金을 支拂하여야 한다는 條件이 묻혔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하여 1956年の 報告書에서는 「購買力回収의 實質的 基準에 대하여 資本의 支出年度와 減價償却을 實施하는 年度와의 사이에 介在하는 弗貨價值의 變動을 修正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指摘하여 減價償却費計算의 基礎價額을 弗貨價值 換算에 의하는 새로운 方法을 提示하고 있다. N.A.A.도 이方法이 購買力維持를 위하여 충분한 정확성을 期할수 있다고 하여 이를 支持하고 있는 것이다.

減價償却의 目的이 이상과 같다고 하면 減價償却이란 「技術의 進步에 即應한 設備의 保持와 競爭的 生產狀況의 維持라는 目的을 위하여 必要資金을 準備하는 것」⁽¹⁸⁾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現實의 動態의 經濟與件에 對備할 收益力의 維持 以及 增強을 위한 準備過程으로서 減價償却을 理解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稅法이나 會計慣習의 立場과는 別個로 獨自의 債却方法을 主張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技術의 進步와 競爭生產과 같은 與件의 會計現象을 考慮할 때 加速償却의 要素를 實際 減價償却에 加味함으로써 「必要한 資金의 準備」 以及 「投下資本의 完全保持」가 可能하고 同時에 生產力의 增強과 높은 收益力의 維持가 繼續的으로 實現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¹⁹⁾

貨幣價值의 變動을 度外視한다 하더라도 現實의으로는 急激한 技術의 進步로 인하여 固定資產의 減價도 單純히 物理的인 減耗(wear and tear)보다는 機能上의 陳舊化(obsolescence)에 基因함이 더욱 重要視되고 激甚한 販賣競爭에서의 勝利를 위하여서는 原價引下, 品質改善, 大量生產能力등 여러가지 有利性이 要求된다. 이러한 時代의 要請에 符應하기 위하여 本說이 減價償却의 目的을 收益力이란 보다 高次元의 事實에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하여 稅法이나 原價償却說과 같은 傳統的 理論의 制約을 脫皮하여 加速償却論을 主張하기까지 한데 대해서는 종래의 理論에 비하여相當히 發展의임을 認定할 수 있다.

(3) 諸見解의 批判과 加速償却論의 立場

지금까지 보아온 諸見解를 綜合해 보면 名目資本維持說 以及 取得原價說은 그前提나 目的이 時代錯誤의 痘이타할 수 있겠고 다른 諸見解는 여러가지 면에서 本質의으로 共通點이 많으며 다만 그 表現이나 問題의 接近方法이 다를 뿐이다. 所期의 減價償却 目的이 完全히 達成되는 경우에도 名目資本維持說은 最大限 單純再生產이 可能한 程度인 消極的性格을 가진데 대하여 그 이외의 見解는 모두 最小限 單純再生產規模을 維持함은 물론이고 動態經濟下에서 擴大再生產規模의 基礎를 確保하려는 積極的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名目資本維持說의 立場을 보면 그것이 減價償却의 計算基礎로서 取得原價를 採擇하고 있다는 點에서 優秀性이 認定될 수 있으나 減價償却의 目的을 最初에 投下된 單純한 名目資本(money outlay 혹은 nominal capital)의 回收에 두려는 點에서는 非現實의이라는

(18) N.A.A. Research Report No. 33 "Current Practice in Accounting for Depreciation", April, 1958, p. 10.

(19) 増谷裕久, 前揭書, pp. 226~7.

減價償却 目的觀의 綜合比較

(見解)	(前提)	(主目的)	(計算方法)	(計算基礎)	(再生產規模 의關係)	(性 格)
1. 名目資本維持說	靜態經濟(安定經濟)	正確登記期間損益計算, 投下名目資本回收(名目資本維持)	定額法	取得原價	最高限單純再生產可能	消極的
2. 實物資本維持說	動態經濟(貨幣價值變動)	同一新舊資產의對替, 投下名實物資本回收(實質資本維持)	時價에 의한 償却	時價 (對替原價)	最小限單純再生產確保	積極的
3. 購買力資本維持說	動能經濟(貨幣價值變動)	同一 또는異種資產의新舊對替, 投下資本의購買力維持(實質資本維持)	可能한限加速償却, 租稅(購買力價值換算)	修正原價 (貨幣價值換算)	最小限單純再生產確保	積極的
4. 收益力維持說	動態經濟(貨幣價值變動, 技術의進步, 販賣競爭)	生產力增強 收益力維持 (資本의完全한保持)	加速償却 (定率法, 級數法, 其他) 租稅目的 償却否定		最小限單純再生產確保, 擴大再生產期待	積極的

非難을 받지 않을 수 없다. 原價基準(cost basis)과 時價基準(market value basis)의 어느것이 보다 優秀한가에 대해서는 意見이 卑區하여 統一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一般的으로는 客觀性이 높고 確實性이 있다는點에서 原價의 優秀性이 認定되고 있다. 時價는 恒常 流動의이고 評價者의 主觀의 介入되기 쉬우므로 確實性이 적고 따라서 減價償却의 計算基礎로서도 不適合하다. 「貨幣價值 不變의 公準」(Postulate of Stability in the Monetary Unit)도 결국은 이에 對備하여 設定된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時價基準에 따른다면 計算의 複雜性이란 重大한 缺點이 있다. 이리하여 原價基準을 더욱 強化하면서 비록인프레 이션이 進行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原價로부터의 離脫」(departure from cost)을 反對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會計學의 元祖인 W.A. Paton은 그 理由로서 다음 네가지를 내세우고 있다.⁽²⁰⁾

- (i) 貨幣價值의 下落은 一時의in 現象에 지나지 않는다.
- (ii) 設備의 大部分은 物價水準의 上昇後(註: 戰後)에 取得된 것이고 기타의 資產도 大體로 時價(註: 事實上)로서 貸借對照表에 計上되고 있다. 따라서 損益計算도 (事實上)時價를 基礎로 하여 行해지고 있다.
- (iii) 비록 原價를 改訂하더라도 稅法上 承認되지 않으므로 無意味하다.
- (iv) 記錄된 原價를 改訂한다는 것은 健全하지 못하다.

물론 이러한 強力한 見解에 대해서는 批判의 餘地도 沒지 않지만⁽²¹⁾ 여하튼 減價償却會

(20) W.A. Paton, "Measuring Profits Under Inflation Conditions", Journal of Accountancy, Jan. 1950. pp. 16~9.

(21) 高松和男; 前掲書, pp. 50~52.

計가 名目資本維持說로 부터 취하여야 할 長點은 確實性 있는 計算基礎, 즉 取得原價이다. 計算基礎面에서는 우수하지만 本說이 내세우는 減價償却目的觀은 靜態經濟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非現實의 意思만 아니라 現實의 動態의 經濟 與件下에서는 物理的 耐用年數主義에 立脚한 定額法의 債却에 의하여 과연 投下된 名目資本의 完全回收마저도 可能한지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減價償却의 目的도 어떻게 하면 變動與件下에서 企業資本의 「實質的 維持」 내지 「完全한 保持」를 實現할 수 있는가에 두어야 한다. 말하자면 動態經濟를前提로 한 減價償却會計가 必要하다.⁽²²⁾ 이와 같이 目的面에서는 名目資本維持說을 除外한 다른 諸見解가 우수하다고 하겠다. 다만 計算基礎로서 時價나 修正原價등을 採用한다는 것은 計算의 確實性이 적고 複雜性이 있다는 批判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하여 客觀性(確實性)이 높고 計算이 簡單한 取得原價를 基礎로 하면서 現實의 動態의 與件下에서 企業資本의 充實한 維持를 가능케 하는 어떤 特殊한 減價償却論이 要求되는 것이다. 이러한 動機에서 主張된 것이 바로 加速的 減價償却論이라 할 수 있다. 즉 加速償却論은 從來의 取得原價基準과 새로운 債却目的觀이 融合되어 나타난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IV. 加速償却論의 主張論據

1. 經營外的 條件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加速償却論이 要請되는 理論的 根據를 어느程度 理解할 수 있다. 여기서는 加速償却論이 主張되지 않을 수 없는 現實的 諸條件를 좀더 具體的으로 보기로 한다. 먼저 經營外的 面에서 보면 現實의 經濟가 動態의이라는 點을 代表의 理由로 내 세울수 있는데 이를 몇개의 要因으로 分類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技術의 急速한 進步
- (2) 貨幣價值의 變動
- (3) 激甚한 競爭, 특히 販賣競爭
- (4) 人爲的 諸政策

(22) 그러나 아직도 實務界에서는 名目資本維持說을 固守하려는 傾向이 많은데 그理由를 N.A.A.의 調查結果에서 찾아 보면 다음 몇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① 稅法에 의한 制約 ② 場所的 減價償却性資產(建物 構築物等)에 대한 減價償却觀의 生產的 減價償却性資產(機械及裝置等)에의 準用. ③ 安定經濟를前提로 하여 技術의 進步와 物價變動등 與件의 事項을 會計實務面에서 排除하려는 傳統的 會計慣習의 固守. ④ 減價償却의 重要性 内지 그것이 會計計算上에 미치는 영향의 過小評價. (N.A.A. Research Report No. 33, pp. 12~14)

(1) 技術의 進步

오늘날에는 技術의 急速한 進歩와 革新에 의하여 有形固定資產, 그 가운데서도 특히 機械 및 裝置와 같은 資產은 機能的 減價로 因하여 그 物理的 耐用年數가 到來하기도 前에 陳腐化(obsolescence)과 不適應(inadequacy)의 現象이 나타나 早速히 廢棄되는 傾向이 有이다. 이것은 特定 資產形態의 技術的 改善, 製造方法의 變化, 生產物種類의 變化 및 需要 패턴의 變化 등에 基因한다.⁽²³⁾ 物理的 減價는 그 發生이豫測可能하고 速度가 완만할 뿐만 아니라 經營內部의으로 어느程度 統制할 수 있는 것인데 대하여 陳腐化로 인한 機能的 減價는 그와 正反對의 性格을 가진다.⁽²⁴⁾ 그러므로 加速償却을 實施하지 않는限 여기에 投下된 資本의 完全한 回收가 어렵게 된다. 더욱이 近代企業은 오토메이션의 傾向에 따라 機能的 減價가 急速한 機械工業化 대지 裝置工業化로 指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固定設備의 比重이 漸增하여 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傳統的 減價償却論에서와 같이 物理的 耐用年數에 立脚한 減價償却方法은 確實히 再考의 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近代會計學의 創始者라 할 수 있는 W.A. Paton과 H.R. Hatfield는 減價原因을 基準으로하여 減價償却을 物理的 減價로 因한 磨滅的 傷却(amortization for wear and tear)——耐用年數主義的 傷却——과 機能的 減價에 立脚한 陳腐化傷却(amortization for obsolescence)으로 區分하고 오늘날 減價傷却의 本質的 問題는 後者の 陳腐化傷却이라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陳腐化傷却에 對備해서는 物理的 耐用年數에 關係없이 初期에 可能한限 加速償却을 實施하여 投下資本을 早速히 回收할 것을 勸獎하고 있다.⁽²⁵⁾

(2) 貨幣價值의 變動

貨幣價值가 變動, 즉 低落한 경우에는 企業資本의 實質的 維持를 위하여 特別한 傷却法이 要求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例題에 의하여 그 理由를 說明해 본다.

但 다음과 같이 假定하자.

- ① 取得原價 ₩ 100,000
- ② 耐用年數 10年
- ③ 殘存價額 ₩ 10,000
- ④ 物價指數는 每期 平均 5%씩 上昇.

(23) T.M. Hill & M.J. Gordon, "Accounting: a management approach", 1960, p. 196.

(24) W.A. Paton & W.A. Paton, Jr., "Asset Accounting", 1964, p. 237.

(25) H.R. Hatfield, "Accounting", 1927, p. 147.

W.A. Paton, "Advanced Accounting", 1941, pp. 256~7.

W.A. Paton & R.L. Dixon, "Essentials of Accounting", 1958, pp. 428~9.

<第IV-1表> 債却結果의 比較

年度末	定額法		150% 定率法		200% 定率法		對替價額	
	年償却額	累計	年償却額	累計	年償却額	累計	年平均物價指數上昇率	對替價額
1	9,000	9,000	13,500	13,500	18,000	18,000	5%	105,000
2	9,000	18,000	13,500	27,500	18,000	36,000	"	110,000
3	9,000	27,000	13,500	40,500	18,000	54,000	"	115,000
4	9,000	36,000	13,500	54,000	18,000	72,000	"	120,000
5	9,000	45,000	13,500	67,505	18,000	90,000	"	125,000
6	9,000	54,000	13,500	81,000	18,000	108,000	"	130,000
7	9,000	63,000	13,500	94,500	18,000	126,000	"	135,000
8	9,000	72,000	13,500	108,000	18,000	144,000	"	140,000
9	9,000	81,000	13,500	121,500	18,000	162,000	"	145,000
10	9,000	90,000	13,500	135,000	18,000	180,000	"	150,000

위의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定額法에 의하면 減價償却을 成功的으로 完遂한다 하더라도 物價의 上昇으로 因하여 耐用年數의 終了時에 가서는 同一固定資產의 對替를 위한 所要의 充當金가운데 50,000의 不足現象이 나타난다. 즉

$$\text{對替價額 } 150,000 - [\text{充當金累計額 } 90,000 + \text{賣却處分에 의한 殘存價額回收 } 10,000] = 50,000$$

같은 定額法에 의하되 債却率을 50%增加시켜 150%定率로 減價償却을 實施하는 경우에도 25,000의 不足이 생긴다 債却率을 더욱 增加시켜 200% 定率로 할 때는 對替價額을 위한 充分한 充當金이 設定된다. 즉

$$\begin{aligned} \text{第1年度末: } & [\text{充當金額 } 18,000 + \text{未償却資產의 賣却處分額 } 91,000] - \text{對替價額 } 105,000 \\ & = 4,000 \end{aligned}$$

但 91,000은 원래의 定額法에 의한 未償却殘額임.

$$\begin{aligned} \text{第10年度末: } & [\text{充當金額 } 180,000 + \text{未償却資產의 賣却處分額 } 10,000] - \text{對替價額 } 150,000 \\ & = 40,000 \end{aligned}$$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注意할 것은 取得原價를 基礎로하는 限 減價償却의 進行은 150% 定率法의 경우는 第6次年度까지, 그리고 200% 定率法의 경우는 第5次年度까지밖에 實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의 債却總額(取得原價 - 殘存價額)이 90,000이므로 이範圍를 超過하여 債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考慮하면 다음과 같은 對替資金의 準備를 위한 充當金이 設定된다.

<150%定率法>

第6次年度末：償却累計額 81,000 + 未償却資產의 處分價額 46,000 = 127,000

<200%定率法>

第5次年度末：償却累計額 90,000 + 未償却資產의 處分價額 55,000 = 145,000

前者의 경우는 同一資產의 對替를 위하여 充當金 設定額이 3,000 만큼 不足하며 後者の 경우는 20,000만큼 超過되어 있다. 그러므로 適正한 傷却率은 위의 兩傷却率의 範圍内에 있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처음의 定額法에 의한 傷却率보다는 높으며 따라서 耐用年數의 初期에 加速傷却의 結果를 가져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貨幣價值의 低落過程에서는 資本의 實質的 保持를 위하여 加速傷却이 要求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加速傷却法은 物價變動期에 있어서 美國의 實務界에서 널리 採用되었던 것으로서 戰時中 不當히 高價로 取得한 設備를 早期에 傷却함과 동시에 操業度의 增大에 의한 設備의 減耗 및 陳腐化를 補償하는 手段으로 使用되어 왔던 것이다.⁽²⁶⁾ 오늘 날에 와서는 物價變動의 時期에 있어서 取得原價에 立脚한 減價傷却의 缺陷을 補完하는 手段으로 널리 利用되고 있다. 물론 이 점에 대한 加速傷却法의 有效性에는 一定한 限界가 있기는 하지만 ⁽²⁷⁾ 物價變動에 對備하여 早期傷却을 하고 固定資產의 對替準備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有利한 것이다.⁽²⁸⁾

(3) 販賣競爭

(26) 2次大戰을 前後하여 1940年的 5個年 特別상각 및 韓國동란 전후 1950年的 5個年 特別상각 등을 들수 있다.

(27) 本稿 “II의 2” 참조.

(28) E.C. Brown, “Effects of Taxation on Depreciation Adjustment for Price Changes”, 1952, pp. 50 ~60.

이點에 대해서 初期의 多額傷却은 後期의 過小傷却을 招來하며 結果的으로는 架空利益의 發生을 가져오고 그에 대한 不當한 租稅量 負擔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加速傷却의 効果는 相殺되거나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온다는 主張도 있다. 그러나 ① 初期의 過大傷却에 의한 利益의 過小計上에 後期의 架空利益과 그 効果面에서 볼때 어느程度 相殺될 수 있고(물론 완전히 상쇄될 수는 없지만) ② 初期에 多額의 充當金을 設定하면 그만큼 租稅負擔이 延遲되어 實際現金支出上 時差益을 얻을 수 있으므로 加速傷却은 物價變動期의 減價傷却의 一方法으로서 有効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關係을 數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R &= \sum_{j=1}^n \frac{(1-h)}{(1+i)^j} a_j + \sum_{j=1}^n \frac{hd_j}{(1+i)^j} \\ &= (1-h) \sum_{j=1}^n \frac{a_j}{(1+i)^j} + h \sum_{j=1}^n \frac{d_j}{(1+i)^j} \\ &= (1-h)A + hD \end{aligned}$$

但, a_j =第 j 年度 稅込豫想收益
 d_j =第 j 年度 稅法傷却必用額
 h =法人稅率
 i =割引率

減價要素가운데 勞務費와 材料費와 그外 經費의 大部分은 實際로 現金이 支出됨으로써 發生하는 現金支出費用(cash-outlay expense 혹은 out-of-pocket cost)인데 대하여 在庫減耗費나 減價償却費같은 것은 現金支出의 沒有費用(non-cash-outlay expense)이다. 問題는 減價償却費가 現金非支出費用이며 繼續企業을前提로하는限 그것이回收되지 못하고 埋沒原價(sunk cost)로轉化할可能性이 많다는데 있다. 그理由는 競爭的諸要因, 특히 販賣競爭과의關係에서 다음 몇가지 경우로 나누어 把握할 수 있다.

- ① 製品이 完全히 賣盡되어 在庫가 없는 경우
- ② 製品의 期末在庫가 있는 경우
- ③ 期末在庫品이 끝내 賣出되지 않고 缺損處分되는 경우
- ④ 期末在庫品을 廉賣하는 경우
- ⑤ 在庫損失이 생기는 경우
- ⑥ 外上賣出이 되어 貸損이 생기는 경우

위의 각 경우를 좀더 具體적으로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内容의 例題를 想定해 보자⁽²⁹⁾

<例示 1>	材料費	400	製品原價 1,000
	勞務費	500	
	經費(消耗品費)	50	
	經費(減價償却費)	50	

첫째 위의 製品이 賣出額 1,100으로 賣盡되는 경우를 보자. 이때에는 다음 <例示 2>와 같이 現金非支出費用(減價償却費) 50과 現金支出費用 950이 모두 完全回收될 수 있으므로 아무런 問題가 發生하지 않는다.

<例示 2>	材料費	400	製品原價 1,000
現金支出費用 950	勞務費	500	
	經費(消耗品費)	50	
現金非支出費用 50……減價償却費		50	

製品現金賣出額 1,100

$$A = \sum_{j=1}^n \frac{a_j}{(1+i)^j} = \text{豫想稅込收益總額의 現在價值}$$

$$D = \sum_{j=1}^n \frac{d_j}{(1+i)^j} = \text{豫想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值}$$

n = 債却資產의 經濟的 耐用年數

위의 式에서 加速償却額 D 의 增加는 稅引豫想收益의 現在價值 R 를 增加시키므로 加速償却의 導入은 確實히 企業의 收益을 增大시키는 것이다.(同志社大學, 『經濟學論叢』, 第13卷, 第3.4.5號, pp. 264~6).

(29) 増谷裕久, 前掲書, pp. 212~9.

둘째 繼續事業에 있어서는 製品이 特定會計期間에 完全히 賣盡되는 일은 드물며 期末在庫品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지금 製品原價 1,000 가운데 800 만이 現金 1,000 으로 販賣되고 200의 在庫品이 남았다고 하면 다음 <例示 3>과 같이 된다.

<例示 3>	現金賣出額	1,000	
	賣出原價	800	{ 材料費 320 勞務費 400 消耗品費 40 減價償却費 40.....(現金非支出費用)
製品原價 1,000			{ 材料費 80 勞務費 100 消耗品費 10 減價償却費 10.....(現金非支出費用)
	期末在庫品 200		

이 때에는 期末製品在庫額의 原價를 構成하고 있는 現金支出費用 190과 現金非支出費用인 減價償却費 10이 回收되지 못한다. 그런데 材料費 労務費 및 消耗品費의 合計 190은 現金支出原價로서 次期에 移延되어 「原價의 塊」로서 資產으로 認識되지만 減價償却費 10은 이미 決算時에 期間配分額으로서 決算分介되어 마치 投下資本의 完全回收가 實現된 것처럼 되지만 實際로는 아직 在庫資產에 包含되어 있으므로 次期以後의 收益과 對應할 것으로 된다. 따라서 實際로 投下資本의 回收가 實現되는 것은 次期以後이다. 期末在庫資產을 構成하고 있는 減價償却費 10의 回收는 次期以後의 販賣에 依存한다. 그러므로 減價償却費 10에 해당하는 만큼의 實質的인 資本回收가 本期에는 不可能하고 次期로 移延되게 된다.

세째 위의 在庫品 200이 영원히 賣盡되지 않고 缺損處分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包含된 모든 原價의 回收가 不可能하다는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네째 위의 在庫品 200이 流行의 變化, 陳腐化等의 理由로 次期에 가서 廉賣되어 現金 100으로 賣出되었다면 거기에 包含되었던 減價償却費 10이 과연 回收될 수 있을지 疑問의

<例示 4>

期末在庫品 (期初在庫品) 200	現金回收 100	{ 材料費 40 勞務費 50 消耗品費 5 減價償却費 5 95
	未回收 100	{ 材料費 40 勞務費 50 消耗品費 5 減價償却費 5 95

餘地가 많다. 이때는 廉賣에 의한 現金收入 100에 減價償却費 10이 包含되었다고 볼 수 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想定할 수도 있다. 그러나 公平한 判斷을 내린다면 <例示4>와 같이 減價償却費 5는 實質的으로는 영원히 回收되지 못하고 埋沒原價로 轉化해 버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섯째 期末在庫品이 次期에 가서 在庫損失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現金의回收가 不可能함을 意味하며 費用이 損失로 轉化하는 결과가 된다. <例示 5>에서와 같이 在庫損失이 發生했다고 하면 그가운데 現金支出費用 95는 完全히 損失로 되고 前期末 決算整理에 의하여 減價償却 5도 마치 回收된 것처럼 처리되었으나 사실상은 在庫損에 轉化하여 實質的으로는 販賣에 의한 그만큼의 現金回收를 바랄 수 없다. 왜냐하면 원래의 減價償却性資產이 在庫資產으로 轉化하였다가 그것이 販賣되지 못하고 損失로 變貌했기 때문이다.

<例示 5>

			材 料 費 40
			勞 務 費 50 } 95
			消 耗 品 費 5 }
			減 價 償 却 費 5 }
第1期末在庫品 200	{		
			材 料 費 40
			勞 務 費 50 } 95
			消 耗 品 費 5 }
			減 價 償 却 費 5 }
在 库 損 100			

여섯째 製品賣出原價 800을 1,000으로 外上賣出한 경우를 想定하고 次期末에 가서 그 가운데 750이 回收되고 殘額 250은 貸損이 되었다고 하자.

<例示 6>

賣出原價 800		材 料 費 240
		勞 務 費 300 }
		消 耗 品 費 30 }
		減 價 償 却 費 30 }
		賣出總利益 150 }
外上賣出金 1,000	{	
		材 料 費 80 }
		勞 務 費 100 }
		消 耗 品 費 10 }
		減 價 償 却 費 10 }
		賣出總利益 50 }
回 收 額 750		現金支出費用 570
貸 損 額 250		現金支出費用 190

이 때에는 貸損額 250을 構成하고 있는 現金支出費用 190은 費用이前述한 在庫損의 경우와 같이 損失로 轉化한다. 賣出總利益으로 될 50은 貸損額 250과 相殺되어 實際 貸損

額은 200 으로 되고 그 가운데 위의 190 은 損失로 轉化하므로 나머지 10(減價償却費)이 문제로 되는데 이것도 在庫損의 경우와 같이 이미 費用으로서 決算整理되었지만 減價償却性資產費用이 다시 現金으로 還元되는 過程에서 逸脫하여 賣出金의 回收不能에 의한 貸損으로 轉化한다. 말하자면 現金→減價償却性資產→(產減價償却)→費用→(賣出)→現金으로 되어야 할 것이 現金→償却性資產→(減價償却)→費用→(貸損)→損失로 轉化되어 實質적으로는 回收될 길이 없게 된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固定資產에 投下된 資本의 回收를 製品販賣過程과 關聯시켜 볼 때에는 流行의 變遷, 製造方法의 改善 및 販賣競爭등으로 因하여는 많은 回收不能의 事由가 存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列舉한 販賣上의 여러가지 경우가 發生하기 쉽고 그렇게 된다면 生產에 參加한 固定資產原價는 埋沒原價로 되어 投下資本의 回收가 不可能하고 暗暗裡에 資本의 潛蝕現象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前記한 動態的要因이 強力히 作用하면 할 수록 加速償却을 實施하여 時間의 遲延에 의한 販賣上의 諸危險의 發生에 對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人爲的 諸政策

加速償却是 원래 國家의 經濟的 또는 財政的 政策手段으로서 보다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本質의 特徵을 찾을 수 있다함은 이미前述한 바있다.⁽³⁰⁾ 오늘날에는 國家가 經濟計劃上 戰略部門 또는 特定部門을 育成한다든지, 國防上 必要한 產業施設을 保護育成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加速償却法은 國家의 이러한 政策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減稅 또는 免稅를 비롯한 여러가지 特典이 수반된 民間投資의 刺激手段으로서 考案되어 널리 利用되고 있는 것이다.⁽³¹⁾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採擇되어온 各國의 加速償却制度의 類型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가운데는 特定目的을 위하여 設定된 政策的立法 대지 時限立法의 性格을 가진 것이 많다.

<美 國>

(1) 60個月 特別償却……1940年에 公布·實施되어 45年 9月에 廢止된 것으로서 戰爭目的을 위하여 取得한 緊急施設에 대해서 60個月間에 全額償却을 許容하는 「緊急施設의

(30) 本稿 “Ⅱ의 3” 參照.

(31) 加速償却의 投資刺激 効果에 대해서는 ① 利益增加機能說(時差益) ② 危險輕減機能說(危險輕減) ③ 設備擴張機能說(資金의 流動化와 利用) 등 세 가지 見解가 있다.

同志社大經濟學會,『經濟學論叢』, 第13卷, 第3.4.5號, pp. 264~270.

增谷裕久, 『減價償却會計』, 昭和40, pp. 236~240.

特別償却控除」(amortization deduction of emergency facilities)의 規定에 의한 것이다. 이 制度는 1949年의 National Defence Act의 制定과 50年의 韓國動亂의 勃發을 契機로 國防上 緊急事態의 對備와 關係된 土地 機械 建物 및 其他 모든 資產에 適用하고자 1950年的 歲入法(The Revenue Act of 1950)에 의하여 다시 復活되었다.⁽³²⁾

(2) 1.5倍率定率法……定額法에 의한 債却率의 150%를 限度로 하여 債却할 것을 許容하는 1945年的 内國歲入局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서 美國에 있어서 法制化된 定率法 債却의 嘴矢였다.

(3) 2倍率定率法……通常의 定額法 債却率의 200%를 限度로 하여 債却할 것을 許容한 1954年的 Internal Revenue Code(第167條)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서 現存하고 있다. 適用對象은 利用程度에 따라 漸次로 消耗하는 資產에 限하고 利用命數가 不明確한 土地 및 美術品 그리고 生命을 推定할 수 없는 果樹와 같은 것은 除外된다.

<英 國>

(1) 初年度特別償却……1944年に 始作된 것으로서 特定資產에 대하여 通常의 債却額以外에 取得原價의 一定比率(예: 建物 및 農業設備는 10%, 機械設備는 20%) 만큼 初年度에 特別償却을 許容하는 1945年的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2次大戰 직후 景氣調整을 위한 投資刺戟手段으로 採擇되었던 것이나 마침내 인프레이션을 招來하여 1952年に 廢止되었다가 그이듬해에 다시 復活되었다.

(2) 新投資特別償却……1954年 所得稅法의 特別措置에 따라 採擇된 것으로서 取得初年度에 普通償却以外에 그 新投資額에 대한 一定率(예: 20% 또는 40%)의 免稅償却을 認定하는 制度이다. 一定率의 免稅償却額은 一종의 補助金的 性質을 가지므로 이制度는 減價償却制度와 補助金制度가 結合된 것이라는 點이 特색이다. 그러나 이의 適用으로 인프레이션과 國際收支의 逆調를 招來하여 1956年に 일단 廢止되었다가 景氣後退期에 羈絆擴大와 投資刺戟을 目的으로 1959年に 다시 復活하였다.

<西 獄>

(1) 2年間特別償却……2次大戰을 前後하여 戰禍로 生業의 基礎를 잃은 者의 事業用資產에 適用된 것으로서 最初의 2年間에 다음과 같이 債却하기로 되었다. 즉 1965年末까지 取得 또는 製造된 動產은 通常의 債却額以外에 取得 또는 製作價額의 50%, 1952年 1月 1日부터 56年末까지 新築 또는 戰災로 부터 再建된 工業用 및 農業建物은 각 年度마다

(32) 여기에서 注目되는 것은 土地도 減價償却의 對象으로 되어 있다는 點이다.

新築 또는 再建價額의 10%의 特別償却을 認定하였다.

그 以外에 1949年 1月 1日 이후에 取得 또는 新造되었거나 戰災로부터 再建된 船舶에 대해서도 普通償却 以外에 取得價額, 建造 또는 再建價額의 15%를 最初의 2年間에 每年 嘰却하기로 한 것이다.

(2) 2.5倍率定率法……1958年의 稅制改革에 의하여 耐用年數 10年未滿의 設備에 대해서는 定額法償却率의 25% 嘰却이 認定되었다. 이것은 技術의 發達로 因한 急速한 陳腐化와 國際競爭力의 培養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후 인프레이션에 對備하기 위한 金融收縮政策으로서 1960年에 다시 위의 嘰却率을 緩和하는 方向으로 改正되었다.

<瑞 典>

一年償却……1938年에 始作된 것으로서 取得原價를 嘰却範圍로 하되 企業이 耐用年數 嘰却率 嘰却方法등을 任意로 選擇決定할 수 있고 利益의 有無에 따라 嘰却이 自由로 우며 利益이 多은 경우에는 初年度에 全額을 嘰却할 수도 있다. 이制度는 가장 극단적인 加速償却形態이나 2次大戰 이후 過大한 投資刺戟으로 인한 인프레이션傾向이 惡起되자 1952年 1月 1日부터 새로운 制度로 對替되었다.

<日 本>

(1) 3年間 5割增償却……1951年 3月부터 始作된 것으로서 重要機械등에 대하여 最初 3年間에 普通償却額의 50%까지 割增償却을 할 수 있다. 重要機械란 營業用이면서 日本經濟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緊急하게 必要한 것에 限한다.

(2) 初年度 2分의 1償却……위의 5割增償却制度로서는 鐵鋼業등 重要基幹產業의 設備近代化 및 經營合理화가 不可能하다는 理由로 1952年 3月부터 採用된 것이다. 財務省告示에 의하여 重要基幹產業用(52個業種)合理化機械로 指定된 것은 初年度에 取得原價의 50%를 加速償却할 수 있는 것이다.

2. 經營內的 要因

加速償却制度가 要請되는 要因을 經營內의 面에서 찾아보면 減價償却費의 壓力問題, 資本의 固定化問題, 修繕維持費問題, 租稅負擔의 遲延效果등을 들 수 있다.

(1) 減價償却費의 壓力加重

近代企業은 經營規模가 擴大되어 감에 따라 資本의 有機的構成度가 점점 高度化되어 가고 있다. 그 結果莫大한 固定資產으로 부터 發生하는 減價償却費의 壓力이 加重되어 製品의 原價節下가 實現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그러한 減價償却費가 製品의 賣盡에 의하여 完全히回收(recovered) 될 수 없는 危險이 存在한다. 여기에 加速償却이 要求되는

理由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다음表에서 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의 Research Report(No. 33, April 1958)에 나타난 美國의 General Mortors 會社와 日本의 松下電工會社의 減價償却關係資料를 보면 General Mortors 會社는 1950年을 基準으로 했을 때 63年에 有形固定資產은 417%로 擴大하여 總資產에 대한 比重도 27%의 純增加를 보였고 그結果 減價償却費도 約 4倍로 上昇하였다. 그러나 賣出額은 겨우 219%밖에 增加하지 않았다. 한편 松下電工會社의 경 우도 昭和 30年을 基準으로 했을 때 9年後인 39年에 와서는 有形固定資產이 18倍以上으로 增加하여 減價償却充當金設定額도 무려 65倍以上으로 增大한데 대하여 같은 時點의 賣出額은 겨우 12倍로 上昇하였음에 不過하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는 減價償却費가 製品의 賣出原價에서 占하는 比率이 를 뿐만 아니라

<第IV-2表> General Mortors 會社의 減價償却關係資料

單位：百萬弗

年 度	有形固定資產 (A)		減價償却充當金		減價償却費		總資產 (B)		賣出額		$\frac{A}{B}$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1950	1,909	100	1,107	100	121	100	3,444	100	7,590	100	55
1958	5,959	312	2,990	270	420	347	6,890	200	9,614	126	86
1959	6,185	324	3,348	302	413	341	7,246	210	11,353	149	85
1960	6,666	349	3,656	330	388	320	7,837	227	12,870	169	85
1961	7,004	366	3,975	359	408	337	8,272	240	11,513	151	84
1962	7,510	393	4,302	388	444	366	9,169	266	14,852	195	81
1963	7,956	417	4,631	418	475	392	9,641	279	16,626	219	82

<資料>; 増谷裕久, 前掲書, p. 95.

<第IV-3表> 松下電工株式會社의 減價償却關係資料

單位：百萬圓

年 度	有形固定資產 (A)		減價償却充當金		總資產 (B)		賣出額		$\frac{A}{B}$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昭和30	435	100	51	100	1,915	100	2,695	100	22.7
32	1,319	303	195	382	5,591	239	5,617	208	82.7
34	2,122	487	535	1,049	8,092	422	7,370	273	26.2
35	2,411	554	739	1,449	10,484	547	10,666	395	22.9
36	3,546	815	1,192	2,337	15,022	784	15,644	580	23.6
37	4,842	1,113	1,752	3,435	19,530	1,019	20,998	779	24.8
38	5,592	1,285	2,450	4,803	22,993	1,200	24,490	908	24.3
39	7,947	1,826	3,326	6,521	32,874	1,716	33,885	1,257	24.1

<資料>; 前掲書 p. 96.

販賣不振으로 因하여 在庫品이 생긴 다던지 또는 在庫損이나 貸損등이 發生하면 그것을 回收하기 조차 困難하게 된다.⁽³³⁾ 이러한 事實은 加速償却이 要請되는 充分한 理由가 되는 것이다.

(2) 固定資產의 流動化

減價償却費의 計上에 의하여 投下資本이 回收된다는 것은 減價償却性固定資產의 流動資產化를 意味한다. 그리하여 加速償却論이 要請되는 理由의 하나는 固定資產에 投下되어 固定化된 資本을 조속히 流動化시키려는데 있다. 近代企業에 있어서는 固定施設에의 投資가 漸增하고 있으며 이로 因하여 多額의 資本이 固定化되기 쉽다. 그러므로 이러한 資本을 早速히 流動化시켜 企業의 可用資本源泉을 늘리는 効果를 가져 오도록 하여야 한다. 加速償却을 實施하면 早速한 時日内에 減價償却充當金이 社내에 留保되고 그것이 自己金融의 重要한 資金源泉이 된다. 그리하여 企業의 可用資金源이 豐富하게 되고 投資能力이 增大되는 것이다.⁽³⁴⁾

다음 表를 보면 先進外國의 경우는 減價償却充當金이 内部資金의 源泉으로서, 나아가서는 投資促進手段으로서 얼마나 커다란 役割을 하고 있는가를 알수있다.

<第IV-4表> 各國企業의 資金調達狀況 單位: %

區 分	韓 國	美 國	英 國	日 本	西 獨
內部資金	34.4	67	67	24	54
社内留保	18.8	18	31	3	7
減價償却費	15.6	49	36	21	47
外部資金	65.6	33	33	76	46
株 式	13.4	5	8	20	13
社 債	—	10	10	2	—
借 入 金	52.2	2	6	27	33
其 他	—	16	9	27	—
合 計	100.0	100	100	100	100

<資料>; 韓國經濟開發協會, 『減價償却에 關한 研究報告書』, 1966, p. 12.

(註); 韓國은 1965年, 日本은 1962年 上半期, 美國은 1962年, 英國및西獨은 1961年임.

그러면 固定資產에 投下된 資本은 어떻게 流動化되는가 이過程을 簡單한 例示에 의하여 說明하기로 한다.⁽³⁵⁾

<去來例>

(33) 本稿 “IV의 1의 (3)” 참조.

(34) 同志社大 經濟學會, 前揭書, pp. 267~270.

(35) 増谷裕久, 前揭書, pp. 207~210.

- (1) 現金 10,000 을 投資하여 營業을 開始한다.
- (2) 減價償却性固定資產 5,000 을 取得하고 代金을 現金으로 支給한다.
- (3) 買入, 기타의 諸經費 3,500 現金으로 支給하다.
- (4) 賣出 5,000 現金으로 受取하다.
- (5) 當期減價償却費 500 을 計上하다.

위의 去來量 試算表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에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例示 7>

試 算 表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1)		(1)		(1)	
現 金 10,000	資本金 10,000	現 金 10,000	資本金 10,000		
(2)		(2)		(2)	
現 金 5,000	資本金 10,000	現 金 5,000	資本金 10,000		
固定資產 5,000		固定資產 5,000			
(3)				(3)	
現 金 1,500	資本金 10,000	現 金 1,500	資本金 10,000	買入 및 經費 3,500	
固定資產 5,000		固定資產 5,000			
買入 및 經費 3,500					
(4)		(4)		(4)	
現 金 6,500	資本金 10,000	現 金 6,500	資本金 10,000	買入 및 經費 3,500	賣 出 5,000
固定資產 5,000	賣 出 5,000	固定資產 5,000	(利益) 1,500	(利 益) 1,500	
買入 및 經費 3,500					
(5)-①直接法		(5)-①		(5)-①	
現 金 6,500	資本金 10,000	現 金 6,500	資本金 10,000	買入 및 經費 3,500	賣 出 5,000
固定資產 4,500	賣 出 5,000	固定資產 4,500	(利益) 1,000	減價償却費 500	
買入 및 經費 3,500				(利 益) 1,000	
減價償却費 500					
(5)-②間接法		(5)-②		(5)-②	
現 金 6,500	資本金 10,000	現 金 6,500	資本金 10,000		前 打 同
固定資產 5,000	賣 出 5,000	固定資產 5,000	減價償却費 500		前 打 同
買入 및 經費 3,500	充當金 500		(利益) 1,000		
減價償却費 500					

(4) 段階의 損益計算書上에서 利益 1,500원 算出되나 또 減價償却費의 計上에 의하여 그 가운데 500은 減價償却充當金으로 拘束(restrict)된 現金이고 處分可能한 純利益은 現金 1,000이다. 한편 (5)段階의 貸借對照表에 있는 現金 6,500의 內譯은 다음과 같은데 이 것에 의하여 減價償却性資產의 減少額 500(5,000—4,500)은 現金 6,500의 一部로 轉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現金 6,500 가운데 500은 減價償却充當金에 의하여 拘束된 것이다. 이와 같이 現金→減價償却性資產→現金이란 減價償却性固定資產循環(fixed assets cycle)이 되풀이 되고 投下資本의回收, 즉 減價償却性固定資產의 流動化(現金化)가 繼續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加速償却을 實施하면 이러한 流動化過程이 훨씬 短縮되고 따라서 資本의 回轉率을 높이고 固定化를 防止할 수 있다.

(3) 性能의 減少와 減價償却費의 負擔能力問題

固定資產은 여러가지 減價原因으로 因하여 그 性能이 점점 弱化되어 간다. 그러므로 同一한 性能을 繼續的으로 維持하기 위하여서는 修繕과 改造등을 빈번히 하여야 하며 이때 문에 耐用年數의 末期에 가까워질수록 修繕維持費가 增加한다. 이렇게 되면 當該資產으로부터 얻는 收益性은 낮고 따라서 減價償却費의 負擔能力도 弱化된다.⁽³⁶⁾ 특히 이러한 現象은 建物 및 構築物과 같이 比較的 性能이 오래 持續될 수 있고 對替性이 적은 場所的 有形固定資產보다도 機械 및 裝置와 같이 生產活動과 直接 關聯되어 그 利用程度에 따라 減價速度가 빠르고 같은 性能을 계속 維持하기가 어려운 生產的 有形固定資產에서 顯著히 나타난다. 그리하여 收益性도 높고 減價償却費의 負擔能力이 큰 耐用年數의 初期에 加速償却을 實施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4) 租稅負擔의 遲延効果

加速償却을 實施하면 耐用年數의 初期에 減價償却費가 過大計上되는 反面에 利益이 過少計上되고 따라서 減稅(tax saving) 내지 租稅遲延効果(effects of tax postponement)를 얻을 수 있다. 加速償却이 이러한 効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찌기 各國에서 自己金融을 통한 企業의 自發的 投資를 促進시키기 위한 手段으로서 加速償却制度가 採擇되었다는 것은 이미 言及한 바 있다.⁽³⁷⁾ 여기서는 이 관계를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定額法에 의한 普通償却과 級數法(the sum-of-the-year-digits method)에 의한 加速償却을 比較・例說하기로 한다.⁽³⁸⁾

(36) 이에 대해서는 本稿 “I의 1” 참조.

(37) 本稿 “IV의 1의 (4)” 참조.

(38) L.E. Morrissey, “Contemporary Accounting Problems: text and cases”, 1964, pp. 257~8.

첫째 單一資產 또는 耐用年數가 비슷한 資產群의 경우를 보자. 단 다음과 같이 假定한다.

- (1) 取得原價 1,000원
- (2) 耐用年數 10年
- (3) 残存價額 0
- (4) 稅率 50%

위의 資料에 의하여 다음 表와 같은 計算結果를 얻을 수 있다. 이 表를 보면 加速償却에 의한 每年的 租稅遲延額은 第1年度末의 40.91을 頂點으로 하여 계속 減少하여 第5年度以後는 減價償却費의 過少計上에 의한 利益의 過大表示로 말미암아 오히려 正常額 이상의 租稅를 負擔하는 結果로 된다.⁽³⁹⁾ 그러나 耐用年數初期의 加速償却에 의한 租稅遲延額과 後期의 租稅過大負擔額이 서로 相殺되어 耐用年數의 終了時에는 加速償却을 하지 않은 경우와 同一한 結果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加速償却을 하면 企業으로서는 아무런 害로운 영향을 받지 않고 納稅를 遲延시킬 수 있는 것이다.

<第IV-5表> 加速償却에 의한 租稅遲延效果

單位: 원

年 度	償却超過額 ①	租稅遲延額	租、稅遲延額 累計	年 度	償却超過額 ①	租稅遲延額	租、稅遲延額 累計
1	81.82	40.91	40.91	6	- 9.09	- 4.55	109.10
2	63.64	31.82	72.73	7	- 27.27	- 13.64	95.46
3	45.46	22.73	95.46	8	- 45.46	- 22.73	72.73
4	27.27	13.64	109.10	9	- 63.64	- 31.82	40.91
5	9.09	4.55	113.65	10	- 81.82	- 40.91	-

(註: 1) 「級數法에 의한 傷却額一定額法에 의한 傷却額」

둘째 繼續的인 對替를 할 必要가 있는 資產群에 대해서 보자. 단 다음과 같이 假定한다.

- (1) 每年初에 對替用 資產 1,000을 買入한다.

<第IV-6表> 加速償却에 의한 租稅遲延效果

單位: 원

年 度	償却超過額	租稅遲延額	租、稅遲延額 累計	年 度	償却超過額	租稅遲延額	租、稅遲延額 累計
1	81.82	40.91	40.91	6	218.19	109.10	540.94
2	145.46	72.73	113.64	7	190.92	95.46	636.40
3	190.92	95.46	209.10	8	145.46	72.73	709.13
4	218.19	109.10	318.20	9	81.82	40.91	750.04
5	227.28	113.64	431.84	10	-	-	750.04

(39) 이 點이 바로 加速償却의 反對論者들[이] 대세우는 가장 有力한 論據이다.

(2) 其他는 前과 같음

위의 資料에 의하여 다음 表를 作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租稅遲延總額이 耐用年數의 初期에는 增加하다가 後期에 가서는 安定되는 경향이 있다. 즉 第9年度부터 750.04의 水準에 머물고 있다.

세계 減價償却性資產에 대한 投資를 계속 擴大하여 가는 경우를 보자. 단 다음과 같이 假定하자.

(1) 第1年度 初에 取得한 資產 1,000

(2) 每年 5%식 資產取得을 增加시킨다.

(3) 其他는 前과 같음.

이때 資產價額은 第2年初에 1,050, 第3年初에 1,102.50, 이렇게 每年 5%식 增加하여 간다. 이러한 現象은 인프레이션時期나 또는 계획적으로 固定資產의 物理的 擴張을 해 나갈 때 볼 수 있다. 이경우에 있어서 加速償却에 의한 租稅遲延效果는 다음 表와 같으며 第9年度末부터는 每年 5%식 租稅遲延額도 增加하여 갈 것이다.

<第IV-7表> 加速償却에 의한 租稅遲延效果

單位: 원

年 度	償却超過額	租稅遲延額	租 稅 遲 延 累 計 額	年 度	償却超過額	租稅遲延額	租 稅 遲 延 累 計 額
1	81.82	40.91	40.91	6	264.91	132.46	599.81
2	149.55	74.78	115.69	7	250.88	125.44	725.25
3	202.47	101.24	216.93	8	217.98	108.99	834.24
4	239.87	119.94	336.87	9	165.23	82.62	916.86
5	260.95	130.48	467.35	10	91.59	45.80	962.6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加速償却을 實施하면 企業으로서는 實質的인 租稅負擔의 遲延效果를 얻을 수 있다. 특히 每期 繼續하여 資產의 一部를 對替하여 간다든지 또는 固定資產에 대한 新投資를 계속 擴大하여 가는 경우에 租稅負擔의 遲延效果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結 言

減價償却會計도 다른 어느 理論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立脚하고 있는 前提가 바뀜에 따라 減價償却의 目的도 달라지고目的이 다르면 減價償却의 方法도 달라야하며 方法이 다르면 減價償却의 結果도 相異하게 나타난다. 오늘날의 經濟가 動態的인 限 減價償却의 前提도 從來의 靜態經濟에서 動態經濟로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減價償却의 目的과

方法도 從來와는 달라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減價 償却會計의 理論的 前提로 되었던 現實의 經濟的 與件이 從來와는 判異하게 變하였고 따라서 減價償却의 目的도 이러한 變動의 與件에 符應할 수 있는 企業資本의 實質的 維持 内지 完全한 保持에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새로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正統的 減價償却方法으로 認識되어온 物理的 耐用年數主義에 立脚한 定額法이 아닌 새로운 方法, 말하자면 加速償却方法이 要求되는 것이다.

加速償却의 本質이 다소 理論的으로 脆弱하고 國家의 政策目的에 따라 그 內容과 類型이 左右되기 때문에 다분히 政策的이긴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取得原價를 基礎로 함으로써 원래 減價償却計算이 內包하고 있는 推象性 内지 不確實性을 最大限으로 排除하고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現實經濟의 動態性에 立脚한 올바른 前提를 세우고 여기에 對應할수 있는 보다 積極的인 目的을 設定하여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는 點에서는 從來의 傳統的 減價償却理論보다는 優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現實的으로 加速償却이 實踐되는 경우에는 稅法의 拘束力を 받아 加速償却의 目的 内지 效果에는 一定한 限界가 있다. 이것은 企業의 利益과 國家의 利益이 반드시 一致하지 않고 따라서 經濟管理上의 減價償却과 租稅目的上의 減價償却이 서로相反되는 性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個別企業의 立場으로서는 租稅目的을 위한 減價償却是 別途로 現實의 動態의in 經濟與件에 대비하기 위한 經營管理目的에서 加速償却制度가 要求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建物이나 構築物과 같이 對替性이 적고 減價速度가 緩慢한 場所의 固定資產보다는 특히 現實의in 經濟與件의 變動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아 減價速度가 빠른 機械 및 裝置와 같은 生產的 固定資產에 대해서는 加速償却의 效果가 높이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成熟經濟 内지 安定經濟가 아니라 우리 나라와같이 發展的 經濟 與件下에서는一般的in 普通償却方式보다는 加速償却이 더욱 適切한 減價償却方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For the Defence of Accelerated Depreciation

*Byung-Tak Ro**

I. Preface

One of the important depreciation objectives is to recover the original capital invested in the acquisition of fixed assets over the estimated service life. Under the system of static economy, the acquisition cost of assets can be completely recovered at the end of service life through the straight-line method only.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our economy today is not static as assumed by the conventional theory, but rather dynamic in that it is doubtful whether the straight-line method based on physical service life can make it possible to recover the original cost invested in fixed assets completely. What is more, it is rather a question whether a complete maintenance of business capital through the repeated replacement of the depreciable assets can be carried out even if the complete recovery of original cost is made. It is desirable from this standpoint to write off and recover the cost of fixed asset acceleratively during an early stage of its useful life as soon as possible.

II. Nature of Accelerated Depreciation

Accelerated depreciation in its nature contains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 (1) it is the relative concept of the straight-line method.
- (2) it is based on the original cost.
- (3) it is influenced by the government's tax policies.

In the first place, accelerated depreciation is designed to write off the asset costs more rapidly over service life in comparing to the straight-line method which depends upon solely physical service life. Thus, accelerated depreciation refers to the greater amount of depreciation charges recognized in the early years of an asset's life as compared to the straight-line method. The words "accelerated" and "ordinary" present the difference of meaning between the two concepts.

* Research Assistant, The Institute of Management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ondly, in accelerated depreciation the departure out of cost is not advocated, but the original cost adopted as the computational basis of depreciation charge. It is, therefore, that even the maximum amounts of depreciation cost derived from the most radical form of acceleration would be less than the original acquisition cost when the scrap value is zero. At the same time, accelerated depreciation aims at excluding the uncertainty of computation caused by such estimated factors as useful life and scrap value by use of cost basis.

Thirdly, the method of accelerated depreciation was advocated by the governments of the advanced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private investment incentive and expanding those industries which were closely related to their national defense purposes. There is no fixed form of calculating accelerated depreciation, that is to say, it is depending upon economic and fiscal policies of each government.

III. Criticism of the Conventional Depreciation Theory

1. Weakness of the Straight-Line Method

The straight-line method based on physical service life has been prevailed as the orthodox depreciation theory. In the method, however, the two theoretical contradictions can be pointed out.

As the method writes off the cost of assets equally per annum through useful life, it is adequate only to the case that both the capacity of asset and the productivity obtained from its use also decline equally per year in course of its useful life. In fact, however, the declining speed of capacity or productivity is not equal per year, but slower at the early stage of service life and faster at the late. (See the Exhibit 2.)

It is desirable, therefore, that the cost should be recovered more rapidly when the asset has high ability to be charged with the larger amount of depreciation cost by virtue of its great capacity and high productivity. The straight-line method is not proper for this purpose.

In addition, a substantial objection to straight-line depreciation is found in the increasing rate of return from the remaining investment, the unrecovered cost. In other words, straight-line assignment tends to distort the relation of income and principal. An asset, for example, costs 2,000 and the owner expects to keep it in service for five years from date of purchase. The estimated net sale value

at retirement is 400. The depreciation per year by the straight-line plan is accordingly 320. The estimated revenues and expenses(exclusive of depreciation) are 1,100 and 700, respectively, per annum. The effect in this assumed situation upon the rate of return is shown by Table III—1. The result is a rate of return ranging from 4.00% for the first year to 11.11% for the fifth year. Evidently this is not a reasonable picture, viewed as business assets in general have no ability to earn more dollars of remaining investment with increasing age.

2. Maintenance of Business Capital and Objective of Depreciation

As to the objective of depreciation in relation to the maintenance of business capital through the recovery of asset cost, there are two kinds of theoretical categories according to the premise of each. One is based on static economy which is represented by the maintenance theory of money outlay or nominal capital and the other on dynamic economy, represented by the maintenance theory of material capital and purchasing power or real capital.

The maintenance theory of nominal capital may be as well approved good on the ground of adopting cost basis. But we come to find it unrealistic due to the fact that it aims at recovering only the same nominal capital as originally invested in acquiring the assets. It is doubtful whether the replacement of the depreciable assets, accordingly the continuing maintenance of business capital, is possible through the recovered nominal capital under ever-changing economic conditions in reality even if depreciation is successfully completed. What is more, it is rather a doubtful question that even the complete recovery itself of the original cost can be realized by depending on the straight-line assignment based on simple physical service life. It is from this reason that there should be a new depreciation theory which is suitable to the nature of our dynamic economy. It is also from this reason that the maintenance theory of material capital and purchasing power capital are advocated. These two have a thing in common in presupposing dynamic economy, but are different as to the objective of depreciation and its computational basis. The former aims at continuing to keep the material capital of business through the replacement of the same assets as written off by adopting market value, while the latter maintaining the continuous equal level of purchasing power by using the adjusted-by-price-index cost. They are also approved considerably good in establishing the positive objective of

depreciation against the ever-changing real economic conditions. But both market value and adjusted cost bear more uncertainty and complexity in its calculation than original cost.

Thus, accelerated depreciation is advocated for purposes of assuring high certainty in the computation of depreciation cost on the basis of original cost as well as recovering the original capital as soon as possible against dynamic conditions in reality. In other words, it is a result from the synthesis of both the conventional cost basis and new viewpoint of depreciation purpose.

IV. Assertor's Grounds of Accelerated Depreciation

1. External Grounds of Management

Accelerated depreciation is asserted on such external grounds of business as:

- (1) rapid technical development
- (2) change in the value of monetary unit
- (3) competitive factors, particularly in sale
- (4) government's tax policies

At the present time, rapid technical development tends to make most of fixed assets retired before their physical service life comes to end. This is attributed to the obsolescence and inadequacy of the assets caused by functional depreciation, which are more remarkable in case of the operating depreciable assets such as machinery and equipment than the ownership depreciable assets such as building and other than building. In this situation, the straight-line method based on physical life is not enough to recover the acquisition cost completely.

In case of marked increase in price level it is almost impossible to keep on maintaining business capital completely through the continuous replacement of assets even if the recovery of asset cost has been successfully made. This is because the reserved depreciation allowance cannot keep pace with the cost of replacement resulted from the increase of price level. (See Table IV-1.) In this case, accelerated depreciation is desirable so that the dangerous influences from the rising price level by the postponement of depreciation period may be excluded if possible.

The depreciation cost of fixed assets is converted into the value of products from the use of them. Therefore, only the sale of the products make it

possible to recover the converted cost, the originally-invested cost. In case of the sell-out of products it is beyond question to recover it. But, considering sales competition, change in fashion, and appearance of the new types of products, we can easily imagine the following cases:

- (1) to keep products in stock at the end of year
- (2) to suffer a loss of the products not to be sold to the end
- (3) to sell the stocks at low prices
- (4) to be a loss in stock
- (5) to be bad debts in credits

Any of the above cases keeps the asset cost out of being recovered and tends to make it a sunk cost forever. It is desirable, therefore, to write off the cost of asset acceleratively at early stage of useful life against the above dangerous cases without delay.

Accelerated depreci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means of the economic and fiscal policy. It has been widely adopted in many countries as a means of investment incentive through tax saving or exemption from taxation. For instance, we can take such as the 60 months amortization and the double-rate declining balance method in the United States, the initial allowance and the investment allowance in the United Kingdom, the two-year depreciation in West Germany and the Swedish one-year depreciation method.

2. Internal Grounds within Management

The pressure of ever-increasing depreciation cost, fixation of capital, increasing maintenance expense in course of useful life, effects of tax postponement, all belong to the grounds of asserting accelerated depreciation within management.

The amounts of depreciation cost tend to increase as a result of deepened 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 and result in keeping the original investment in assets out of being recovered as well as the products from being cost down. Taking the General Motors Corp. for instance as shown in Table IV-2, we can see that the amounts of depreciation cost rose from 100% of 1950 as a basic year to 392% of 1963, while the sale increased only by 219% during the same period. Another instance of Matsushita Electric Engineering Co. in Japan shows that the depreciation allowance increased to 6,521% in 1964, but the sale only to 1,257, if 1955 is taken as a basic year. It follows from the above fact that depreciation cost generally leads to occupy the increasing amount

of the production cost and then the asset cost is hard to be recovered if the products are not sold out. This is another reason why accelerated depreciation is required.

Secondly, the large amount of business capital is generally frozen in the various kinds of fixed assets. As a result, we can often find such businesses as suffering from the shortage of working capital. One of the important objectives of accelerated depreciation in this case is to give an adequate liquidity to the fixed capital as soon as possible, the fixed assets cycle of which is as follows: Cash→Depreciable Assets→(Depreciation)→Cost→(Sale)→Cash. As in the cycle, the period from the original cash until to recovered cash is much shortened by depending upon 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which accordingly becomes one of the powerful means of self-financing in business.

Thirdly, as the maintenance expenditure for assets is to increase in course of service life, little profits can be made from their use around the end of service life. It is more effective, therefore, to write off the asset costs and recover the invested capital as early as possible when the assets make larger profits in good capacity.

Fourth, 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enables tax expenditure to be saved or postponed. The effects of tax postponement is more outstanding in case of continuing to replace a part of assets as in Table IV-6 and extend the new investment in fixed assets as in Table IV-7. This explains the ground of adopting accelerated method.

V. Conclusion

The nature of accelerated depreciation is a little complicated, and its systematical types subject to vary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fiscal policies or tax regulations. On the one hand, however, it excludes the uncertainty in computating depreciation cost by cost basis and, on the other hand, establishes as its objective the complete maintenance of business real capital against the ever-changing economic conditions in reality by presupposing dynamic economy. Due to this fact, accelerated depreciation theory is superior to the conventional depreciation theory of straight-line method.

In spite of this apparent superiority, it is kept from being adopted in reality because the restrictions of tax law are imposed on it. But the depreciation

for tax purpose is a question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one for business management itself. Even in the case that 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is not permitted by tax law or regulation, it may be more reasonable to adopt the method as for business if it is desirable. As the rate of operating depreciable assets such as machinery and equipment increases and as the dynamic conditions of our economy as in developing countries becomes to be remarkable, accelerated depreciation should and will be recommended as one of the attractive methods of accounting for business administration.